

대구광역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권기훈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년월일 : 2022. 11. 18.

발의의원 : 권기훈, 박종필
김재우, 박소영
윤관근, 김재용
이재숙, 육정미
손한국, 이성오
의원(10명)

1. 개정 이유

- 대구시의 꽃 생활화 촉진 지원사업의 꽃 체험 교육이 2019년 이후로 사업이 축소되어, 코로나19가 완화된 현시점에서 원예교육 관련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관련 사항을 재정비함
- 지역의 시민에게 체험학습과 원예치료 등 교육훈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생활에서 정서적 안정과 행복함을 느끼도록 기여하고, 나아가 화훼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공헌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가. 지원사업의 원예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(안 제5조)

3. 참고 사항

- 가. 조례안 : 붙임
- 나. 관계법령 : 「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」
- 다. 예산조치 : 관계부서와 협의 완료

대구광역시 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6. 화훼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체험학습과 원예치료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지원 사업 등) ① 시장은 화훼 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~ 5. (생 략)</p> <p>6. <u>화훼산업관련 교육훈련 사업</u></p> <p>7. (생 략)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5조(지원 사업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<u>화훼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체험학습과 원예치료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업</u></p> <p>7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관 계 법 령

□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

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훼산업의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제13조(교육훈련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화훼산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화훼와 관련된 지식·기술 등을 보급·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